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미시장난감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별표 삭제(안 제3조)

나. 구미시장난감도서관 및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 명시(안 제14조제2항)

다. 구미시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지도·감독 주체 명시(안 제1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명칭 및 위치)”를 “(설치)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설치) 구미시 장난감도서관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 다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기간은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소속 직원”을 “담당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구미시 장 난감도서관(이하 “장난감도서 관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 다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 관을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설치)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 다)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 다 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 영할 수 있다.
② 장난감도서관 명칭 및 위치 는 별표와 같다.	
제14조(위탁계약) ① (생 략)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 되,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 탁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4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구미시육아종 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기간은 구미시 육아종 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으 로 한다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지도 · 감독 등) 시장은 장 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 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.	제17조(지도 · 감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담당 공무원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아동보육과
입 안 자	과 장	권 혁 성
	담 당	이 정 화
	담 당 자	양 혜 정 (480-6574)